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지정·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97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11. 1.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전담관 등(안 제2조의2 신설)

- 문화유산전담관은 5년 이상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과장급 이상의 직급 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하며, 관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의 종합·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등으로 지정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 조사, 보존·관리 및 활용의 지도 등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나. 역사문화환경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안 제7조의 3 신설)

-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되 필요 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은 사업계획이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 적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정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문화유산전담관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이하 “문화유산전담관”이라 한다)은 5년 이상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2 또는 제12조 및 별표7에 따른 과장급 이상의 직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정책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2. 시·특례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②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점검

2. 관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의 추진
3.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에 대한 지도, 발주와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4.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하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2.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및 별표2의3에 따른 학예일반 직류 전공의 석사 이상 학위가 있는 공무원
4.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 전문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5.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관할 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 조사, 보존·관리 및 활용의 지도 등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 필요성 및 개요
3. 지원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
4.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5. 사업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의 실효성, 사업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협의 기준, 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문화유산전담관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이하 “문화유산전담관”이라 한다)은 5년 이상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른 과장급 이상의 직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정책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2. 시·특례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②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점검
2. 관할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의 추진
3.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에 대한 지도, 발주와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
4.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하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2.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신 설>

이상 수행한 공무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학예일반 직류 전공의 석사
이상 학위가 있는 공무원
④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
문화 전문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관할 구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 조사, 보존·관리 및 활용
의 지도 등 문화유산 관리에 관
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문화유산전담관을 지
정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등) ① 시·도
지사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
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 필요성 및 개요
3. 지원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
역의 현황과 특성
4.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5. 사업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
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주민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
명회를 개최하거나 기간을 정
하여 지역 주민에게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
업 계획이 역사문화환경의 보
호 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
향,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
진의 실효성, 사업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정 여부 등을 기
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

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협의 기준, 점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903